

채권관리규정 일부개정 사전예고

1. 제·개정 이유

악성채무자 등이 은닉한 재산 발굴 및 채권회수 제고를 위하여 은닉 재산 신고센터 운영 및 포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 제·개정 내용

공사 임직원 외의 자가 채무관계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채권을 회수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개인은 2022년 6월 8일 18:00까지 (도착기준)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주택도시보증공사 채권관리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

나. 제출자의 성명(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, 이메일 주소

<보내실 곳>

- 주소 :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, BIFC 15층 주택도시보증공사 채권관리실
- 담당자(이메일) : 강준구 대리 (guikang@khug.or.kr)
- 전화번호 : 051-955-5822
- 팩스번호 : 051-955-5805

4. 예고기간 단축사유 (기간 20일 미달 시)

- 이사회 일정 및 연내 신고센터 운영기반 마련을 위한 신속한 규정개정 필요

채권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 신설 >	제43조의2(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) ①공사 임·직원이 아닌 자가 채무관계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채권을 회수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 ②은닉재산 신고 처리를 위한 신고센터 운영, 포상금 지급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	채무관계자 채권회수 제고를 위하여 도입 은닉재산 신고센터 운영 및 포상금 지급기준 마련을 위한 상위 근거 마련
	부 칙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6월 일부터 시행한다.	